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46

발의연월일: 2021. 6. 23.

발 의 자: 강선우·강준현·김영호

김의겸 • 남인순 • 맹성규

박성준 • 백혜런 • 변재일

소병훈・송옥주・송재호

이규민 · 이학영 · 허종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반면, 학대 사건 보도에 있어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추측성 보도 로 인한 2차 가해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대 사건 보도의 기본원칙을 마련할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국가가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1 신설).

법률 제 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국가는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9조의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
	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국가는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
	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
	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
	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
	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
	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노
	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
	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
	<u>야 한다.</u>